

안산 고잔신도시 대기오염 방지대책 촉구결의안

의 안 번 호	640
------------	-----

발의년월일 : 1997 . 11. 18.

발 의 자 : 차평덕의원외 20인

1. 주 문

- 안산시는 1986년 1월 1일 시로 승격된 이후 꽤적인 녹색도시를 회망하여 왔으나 지금에는 도시근교 반월 및 시화공단에서 배출되는 공해물질과 반월 유연탄 열병합발전소의 공해로 인하여 많은 시민들이 악취와 분진 등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며,
- 더욱 안산2단계 고잔신도시에 건립될 지역난방용 열병합발전소가 환경부에서 고시된 청정연료인 LNG 사용을 무시하고 공해물질인 방카-C유(LSWR)를 사용토록 추진하고 있어 향후 기존 도심은 물론 신도시 약100만 시민의 환경문제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어 강력하게 LSWR 사용을 중지하기를 아래와 같이 촉구함.
 - 안산시는 현재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대기오염 방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고잔신도시의 환경 개선 대책을 제시하라.
 - 안산시와 한국 지역난방공사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고잔신도시 신규 열병합발전소의 연료로 저유황 방카-C유(LSWR)의 사용은 절대 불가하며 청정연료만 사용토록 하라.

- 안산시와 지역난방공사는 방카-C유 사용을 합리화하기 위한 용역을 즉각 중지하고 환경부에서 고시한 법을 준수하라.
- 현재 신규 열병합발전소의 부지가 유연탄 반월 열병합발전소 및 쓰레기 소각부지와 인접하여 복합공해의 유발이 예상되므로 발전소 부지를 재검토 하라.

2. 제안이유

-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환경문제는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으며, 이미 선진 각국에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구의 황폐화를 예측하고 있는 등, 그린라운드 및 기후변화 협약 등을 통하여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는 실정이다.
- 특히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대기오염의 주요원인으로 공장 및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아황산가스에 의한 산성비와 프레온가스에 의한 오존층 파괴, 특히 화석에너지인 석탄과 석유류(휘발유, 방카-C유)에서 배출되는 탄산가스 및 각종 오염물질로 인하여 지구의 온난화 현상이 가중되고 생태계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 이러한 심각성을 직시하여 환경부에서는 1996년에 수도권지역의 공동주택(아파트등) 및 업무시설의 연료는 청정연료(LNG)의 사용을 의무화 하였으며, 신규로 건설되는 열병합발전소 연료도 청정연료(LNG) 사용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 그러나 안산시는 1977년 도시건설 당시 호주의 켄버라시를 모델로 하여 쾌적한 환경도시로 계획되었으나 20년이 지난 오늘의 환경문제는 날로 심각한 실정에 있다. 이미 도시부근 반월공단 및 시화공단 2,500개 업체에서 내뿜는 공장의 배기가스와 반월 열병합발전소의 유연탄 사용으로 인한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분진 및 악취로 인하여 주민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는 형편이다.
- 공단주변에 위치한 원곡동, 공단동, 초지동은 물론이고 안산의 최대 주거지역으로 각광받았던 감자골과 사동, 그리고 신규 개발도시인 본오동 지역도 계속되는 악취로 인하여 주거기능을 상실하고 있어 심각성이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 이와 관련하여 새로이 개발되고 있는 안산 고잔신도시 개발지구의 대기오염은 어떻게 전망하겠는가?
- 현재 안산 고잔신도시는 230만평 부지에 인구 14만여명의 주거 인구를 수용하며 구 도심과 연계하여 향후 100만 도시로 성장 할 예정으로 있으나 대기오염의 환경문제는 전혀 대책이 수립 되고 있지 않다.
- 고잔신도시의 난방원으로 지역난방을 사용토록 되어 있으나,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 기존 반월 열병합발전소의 잉여열과 소작장의 폐열 이용과는 달리 별도로 1,525억원의 막대한 투자비를 투입하여 80,000KW의 열병합발전소를 신규로 건립할 예정으로 있으나

- 신규로 건립될 발전소의 연료는 현행법상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수도권지역에는 반드시 청정연료인(LNG)로 사용되어야 하나 사업주체자인 안산시와 지역난방공사에서는 청정연료를 사용할 경우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연료변경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여 현행법 자체를 개정하여 방카-C유(LSWR)로 교체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 이는 지역주민의 환경과 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안산시와 국가공기업인 지역난방공사가 국가 공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단지 수익성만 목적으로 현행 환경법을 무시한 채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 더욱이 공해가 심한 방카-C유가 사용될 경우 기존 유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반월 열병합발전소 및 공단의 배기가스와 복합되어 기존 안산시 지역은 물론 고잔신도시에 극심한 대기오염 문제를 야기시켜 녹색도시가 아니라 회색도시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다.
- 최근 안산시와 근접한 시화공단 배후도시 정왕동 1만5천 가구 주민들은 계속되는 배기가스와 악취, 분진등으로 시민 건강을 크게 위협받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범시민 월기 대회(1,500명 참가)를 개최한바 있다.
- 우리의 환경문제는 우리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세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하므로 오늘의 안산시 환경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향후 들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하게 되므로 우리 안산 시민은 모두 뜻을 같이하여 더이상 안산시가 회색 도시, 죽음의 도시로 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안산시 의원 일등은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안산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653
------------	-----

제출년월일 : '97. 12.
제 안 자 : 안 산 시 장

□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

- '97. 9. 11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코자함
- (지금까지는)

준농림지역인 대부동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숙박업, 관광숙박업, 식품접객업 설치를 허용하고, 다만, 조례로 일정지역과 일정행위를 제한토록하여, 우리시는 “안산시준농림 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를 제정하여 숙박업, 관광숙박업, 식품접객업의 설치를 제한하여 왔음

- (앞으로는)

개정 시행령이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중 시·군 설정에 맞게 허용대상 및 허용지역을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에 따라, 우리시 기존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설치근거조례는 제정하지 않음으로써 대부동지역의 수질과 경관을 보존코자함.

□ 폐지조례안 : 덧붙임

□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덧붙임
- 소요예산 : 해당사항 없음
- 입법예고사항 : 해당사항없음

※ 입법예고기간 : '97. 11. 10 ~ '97. 12. 1

안산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폐지조례안

안산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